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해당 과태료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제정 1991.07.10. 조례 제15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3.30.~ 2016.4.19.(20일 이상)

라. 기 타 :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5호, 2015.5.18., 일부개정]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19.] [대법원규칙 제2620호, 2015.10.7., 일부개정]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4.24.>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

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⑤ 시·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 시·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3.5.10.] [대통령령 제24532호, 2013.5.10.,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15.]